**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가산2차 SK V1 AP타워 913호 T. 02-6671-6005 F. 02-6671-0748 E. festa@gbexhibition.com**

**1. 신청(계약)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  **정보** | **업 체 명(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 | **E-mail**  **세금계산서 발행용** | |  |
| **주 소** | |  | | | | |
| **담당자명** | |  | | **직위** | |  | |
| **회사전화(내선번호)** | |  | | **휴대폰** | |  | |
| **담당자 E-mail** | |  | | **팩스** | |  | |
| **참가분야** | | □ 와인 □ 전통주 □ 맥주 □ 스피릿 □ 주류용품/소품 □ 안주/식음료 | | | | | |
| **주요전시품목** | | 국문 : | | | | | |
| 영문 : | | | | | |
| **상호간판명** | | 국문 : | | | | | |
| 영문 : | | | | | |

**※ 상호 간판명은 간판에 기재 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은 박람회 관람안내장 및 현황판에 기재될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2. 부스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단가(vat별도)** | **신청내역** | **신청금액** | **비 고** |
| **전시부스** | **3m×3 m** | **독립** | **2,000,000원** | 부스 | 원 | 전시 면적만 제공 |
| **조립** | **2,300,000원** | 부스 | 원 | 안내데스크(높이1m) 1개  의자1개, 전기1KW 포함 |

**3. 부대시설 및 기술지원 신청**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가(vat별도)** | **신청내역** | **신청금액** | **비 고** |
| **전기** | **주간** | **40,000원** | KW | 원 | 조립부스 기준  기본 전력 1KW 제공 |
| **24시간** | **50,000원** | KW | 원 |
| **인터넷** | **LAN** | **150,000원** | 회선 | 원 | 설치 및 사용료 |
| **급배수** | **급배수** | **250,000원** | 개소 | 원 | 설치 및 사용료 |
| **합계금액** | | | | 원 | | |
| **부가세(합계금액의 10%)** | | | | 원 | | |
| **총 금액** | | | | 원 | | |

**참가비 납부 계좌 : 기업은행 141-069032-04-188 / 예금주 : 글로벌비즈마켓㈜**

**\* 참가신청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시 일주일 이내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시고, 잔금은 2024년 9월 20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 귀 전시회 제반 운영규정 및 계약조건(이면수록)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2024광주주류관광페스타 참가를 신청 계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인)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2024 광주주류관광페스타 사무국 귀중**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 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4 광주주류관광페스타”,"GWANGJU LIQUOR TOURISM FESTA 2024”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글로벌비즈마켓㈜”,”광주광역시관광공사” 를 말한다.

**제 2조 (전시 부스면적 할당)**

주관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주관자의 재량으로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면적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위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전시자는 할당된 전시 부스면적을 주관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계약)서는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9월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 부스면적이 할당되며, 참가비의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 + 부대시설 신청비용)은 주관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정 계좌에 납부한다.

**제 4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공간 및 외곽 경비, 통로청소, 홍보자료 제공이 포함된다.

**제 5조 (설치 및 철거)**

전시자는 규정한 기간 내에 설치 및 책임을 하여야 하며, 할당된 전시 부스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6조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홍보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공사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24 광주주류관광페스타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7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부스 전시를 위한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주관자가 요청하는 화재 방지와 관련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제공하지만,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등에 관한 궁극적인 관리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제 8조 (전시 및 홍보활동)**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 해야 하고, 타사 제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전시할 수 없다. 또한 전시자가 계약한 부스공간 내에서만 홍보활동을 해야하며, 통로나 공용공간에서는 일체의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관람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은 반드시 주관자에게 문서로 승낙 받아야 한다.

**제 9조 (참가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전시한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행사 개최 6개월전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행사 개최 3개월전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행사 개최 3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 11조 (전시회 취소, 변경)**

주관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수원메쎄 전시장 관리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기 참가 규정을 동의합니다.**

**회사명 : 대표자 : (인)**